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

15-11-13 (보고안건)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

2015. 11. 13.

기획재정부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추진 방향	2
III. 세부 추진 과제	4
1. 입찰 · 계약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	4
2.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8
3. 계약 및 조달시스템 선진화	11
IV. 과제별 추진 계획	15

I. 추진 배경

가. 현황

- 국내 공공조달의 시장규모^{*}는 GDP(1,485조원)의 7.5% 수준인 약 112조원 정도로 매년 증가 추세

('10) 104.4조원

('12) 106.4조원

('14) 111.5조원



- 공공조달은 시장경제원리를 원칙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중소기업 지원, 산업기술경쟁력 제고 등 정책적 역할도 추구

나. 문제점

- 전자조달시스템 운용으로 입찰절차 관련 비리는 감소 추세이나 특정업체와 유착된 계약비리는 여전히 발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
- 수의계약 등 경쟁입찰 특례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 품질미흡 물품의 납품 등 발주기관의 불만
 - 발주기관과 업체 간 유착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조건을 반영하여 가격을 부풀리거나 부적격 물품 구매
-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가격 위주의 낙찰제도는 덤핑 낙찰 및 이로 인한 품질저하,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를 야기
-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품질·고용률 제고 및 최적가치 (Best Value)를 추구^{*}하는 계약 제도의 선진화 필요성 제기

* 영국은 '90년대 중반의 정책 전환 효과로 예산절감률 확대('11년: 13.1%→'14년: 19.6%)

II. 추진 방향

◇ 공공조달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로 재정건전성 제고

① 계약특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입찰·계약 절차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경쟁입찰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공조달 시스템의 공정성 제고
- 입찰·계약 단계별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 증대

②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단속 및 처벌 강화로 계약 비리 방지

- 담합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일원화로 부당납품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조달청에 조사 및 시정요구권 부여

③ 입·낙찰제도 선진화를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SW 등 기술집약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 가격중심 평가에서 최적가치 낙찰제(가격 및 수행능력 종합평가)로의 단계적 전환(1단계 공사분야 → 2단계 서비스 분야)
- SW 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업종별로 적합한 발주체계 구축

정책 목표

공공조달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로 재정건전성 제고

입찰 · 계약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계약 · 조달시스템
선진화

기본 방향	추진 과제
I. 입찰 · 계약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경쟁입찰 특례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② 구매규격 사전공개 등 정보공개 내실화③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입찰 투명성 제고
II.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담합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도입②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③ 부당납품 조달행위 감시 · 조사 강화
III. 계약 및 조달시스템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종합심사낙찰제 정착 및 단계적 확대② SW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빌주체계 수립③ 원가계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인프라 확충④ 간접비 등 계약금액조정제도 합리적 개선

기대 효과

- ◆ 시장경제원리와 정책적 역할이 조화되는 투명한 입찰환경 구축
- ◆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조사 및 벌칙 강화로 입찰·계약비리 근절
- ◆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조달 시장 구축

III. 세부 추진 과제

1. 입찰·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경쟁입찰 특례제도 평가시스템 도입, 구매규격 사전공개, 낙찰자 결정 시 평가체계 개선 등으로 투명·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1

경쟁입찰 특례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 ① (현황) 국가계약법령은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정책적 필요로 수의계약*, 제한경쟁을 허용

* 실질적으로 경쟁이 곤란한 경우(예: 1인 생산자)나 정책적 필요성(예: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 판로지원 목적의 우선구매 제도* 등 개별법상 경쟁입찰 특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부재

*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있으며 최근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안도 발의('15.10월)

◇ 최근 언론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물품(207개) 우선구매제도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

* “민간시장은 신규진입이 어려워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중견기업 지위를 포기하고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한국경제, '15.11.4.)

- ② (개선) 각종 경쟁입찰 특례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제도의 효과성 및 필요성 검토

- 국가계약법 및 개별법에 규정된 수의계약, 우선구매 제도 중 파급효과가 큰 1~2개 제도에 대한 시범 평가* 실시('16)

* 재정사업 심층평가(적절성, 효과성, 효용성 등을 평가)를 준용

- 이후 법제화를 통해 각 특례제도에 대한 주기적 평가 추진

☞ (기대효과) 경쟁입찰 특례의 실효성 점검으로 투명성·효과성을 강화하고 경쟁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국가계약법 및 개별법의 경쟁입찰 특례 제도

①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제도는 5가지 사유^{*}로 구분

* ① 천재지변 등 시급한 경우, ② 특정 기술필요 또는 생산자가 1인,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구매, ④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구매, ⑤ 소액 등 경쟁 비효율

② 개별법 상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고용·소득 확대^{*} 등의 사유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등의 사유로 구분

*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등

□ 주요 경쟁입찰 특례제도 유형별 분류

구 분	분 류	주 요 내 용	실 적 [*] ('14)	근 거 법 률
사회적 약자 지원	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1%)	3,530억원	국가계약법 및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기업 구매목표제(0.45% 권고)	0.8조원	장애인기업법
	여성(중소)기업 지원	여성기업 의무구매(3~5%)	물품 1.96조원 용역 1.17조원 공사 2.36조원	국가계약법 및 여성기업법
	국가유공자 지원	자활집단촌, 상이단체 수의계약	조달청 수행실적 585억원	국가계약법 및 국가유공자단체법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3,550억원	사회적기업육성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207개 물품 (중기제한경쟁입찰)	조달청 수행실적 8.7조원	판로지원법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122개 제품군 (중소기업 직접구매)	공사실적 1천억이상 기관 대상 11조원	판로지원법
	소액 물품 중소기업 의무구매	2.1억원↓ 물품, 용역 (중기제한경쟁입찰)	-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	기관별 조달 총액의 50% 이상	78조원	판로지원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기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2.62조원	국가계약법 및 판로지원법

[1] (현황)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일부 발주기관은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토록 하여 입찰시 잡음 발생

- * “특정업체 콕 찍어.... 구조장비 납품 받는 관공서”(한국경제, '14.5.20.)
- 입찰공고 이전에 특정 규격 지정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조달청은 1995년부터 도입 운용중*)
- *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사전규격 공개비율이 2.6%(2014년) 수준에 불과

< 구매 규격 사전공개 현황(조달청)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전공개(건)	17,568	19,907	22,382	24,097	24,623
의견등록(수)	1,989 (11.3%)	4,402 (12.1%)	3,722 (16.6%)	4,349 (18.0%)	3,989 (16.2%)

-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단축(7~40일 → 5~10일) 할 수 있으나 긴급입찰 사유를 자의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를 제한

[2] (개선)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하고 공공조달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공공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상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 규격을 사전공개하도록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 건 중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은 각 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공정하게 심의 처리
 - * 규격이 공개될 경우 관련 업체는 공개된 규격서 열람 및 의견 제시가 가능
- 재해예방·복구 등 긴급입찰사유를 명확히 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고기간 단축 방지(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5.6월)
- ☞ (기대효과)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비리와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조달기업의 활발한 입찰 참여 촉진

[1] (현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서 일부 평가위원의 비 정상적 평가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사례 발생**

* 기술평가(제안서평가) + 가격평가 = 종합평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예시) 산재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시 극단적 기술평가 사례 : A사(90점), BCD사(55점)

- 제안서 평가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심사위원을 다수로 구성·운영하나 평가점수 부여는 위원의 자율적 결정사항

[2] (개선)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 점수를 공개하고 평가의 신뢰성 확보 조치 추진

-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 점수를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계약예규 개정, '15.9월)



업체명	점 수	점 수			
		갑	을	병	평균
A사	95점	100점	95점	90점	95점
B사	90점	85점	90점	95점	90점
C사	85점	85점	80점	90점	85점

-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공개제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의 취지 및 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명시
- 일부 위원의 평가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평가방법 개선 추진

< 예 시 >

◇ 평균 대비 $\pm 10\%$ 를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은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전체 토론을 실시 후 재조정

- ☞ (기대효과) 공정·타당한 심사로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2.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입찰 담합 시 손해배상의 예정,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입찰제한, 불량 납품 감시·조사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장치 마련

1

담합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도입

① (현황) 담합 억제를 위한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입찰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 ('09) 4대강 공사, ('10) 수도권고속철 4공구 공사, ('12)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등

○ 국가계약법상 담합업체에 대한 계약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운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담합사실은 통상 입찰 후 수년이 지나서 적발 →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계약이 대부분 진행되어 계약해제가 실질적으로 곤란

** 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자연·회피하는 사례 빈번

○ 담합행위에 따라 국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나,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여 적극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장애

* '06년 美 Abrants-Metz 등의 논문에 의하면 평균가격 16% 상승효과 추정

② (개선)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담합발생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도 도입

○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청렴계약서* 및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담합·뇌물제공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위반 시 계약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

-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던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예시 : 5%)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 발주기관은 담합 등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계약상대자는 손해액이 적음을 입증하여 감액 가능)

[1] (현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재정 효율성 훼손,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 폐해 야기

- 이에 따라 부정수급자 One-Strike Out*,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등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14.12.4)
 - *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자는 보조금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히 금지
- 그러나, 부정수급자로 보조금 사업에서 퇴출되더라도, 공공조달 시장에는 여전히 계약상대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 제도 보완 필요

[2] (개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비교 >

현 행	개 선 (안)
계약불이행, 부실이행, 안전사고 담합, 뇌물, 위조, 사기 조세포탈 등 22개 행위	좌 동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기대효과)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강화(보조금 사업 + 공공조달 퇴출)로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① (현황) 안전·품질 등 규격 미달 물품을 납품하는 불공정 조달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

-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건수(조달청): ('13)71건 → ('14)123건 → ('15.10월)171건
- 불공정 조달행위는 국고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에 해당
 - * 기준 미달의 철근구조물 사용 등으로 경주 마리나 리조트 붕괴사고('14.2월) 등 발생
- 조달청을 중심으로 계약이행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품질 관리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하여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한계
 - * 조달물자 중 어린이, 소방, 도로 등 9개 안전 분야 122개 품목을 지정하여 '15~'17년까지 한시적으로 현장 품질점검을 강화

② (개선) 안전관련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창구 일원화, 조사·시정요구권 신설 등 품질관리 체계 정비

-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품목을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품질점검 실시하고 품질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 부여
 - * 검사불합격(규격미달)업체에 대한 거래정지 시 일체의 감경을 제한
- 공공부문에 대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창구를 일원화^{*}(개별부처 → 조달청)하고, 조사 및 시정요구권의 법적 근거 마련^{**}
 - * 다만, 국방분야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현행대로 방사청에서 운영 하되, 신고가 용이하도록 온라인 접수창구 신설
 - ** '공공조달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중
- ☞ (기대효과) 품질 및 규격 미달 물품 납품 근절로 국민안전 제고 및 공공조달의 투명·공정성 증대

3. 계약 및 조달시스템 선진화

종합심사낙찰제 정착 및 확대, SW 산업 경쟁력 제고, 합리적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선진적인 계약·조달시스템 구축

1

종합심사낙찰제 정착 및 단계적 확대

① (현황) 현행 입찰제도는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적정업체 선별기능이 미흡

- 공사계약의 최저가낙찰제는 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덤핑 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저가 하도급 등 문제점 야기
- 용역 계약의 경우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의 변별력이 낮아 실질적으로 가격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

② (개선)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최적가치낙찰제(가격 및 수행능력을 종합 평가)로 전환 추진

- (공사계약) '16년부터 최저가낙찰제(적용대상: 300억원 이상 공사)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환**

*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

** '14년부터 공공기관 시범사업 중('14년: 18건, '15년 10월: 19건)

- (문화재 수리) 낙찰자 선정시 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가격에 상관없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 (용역)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 확대 적용을 검토

* 물품·용역의 낙찰제도 등과 관련하여 조달연의 용역 수행 중 ('15.6-12)

☞ (기대효과) 고품질의 계약목적물 조달, 적정원가 지급 및 안전·고용 등 건전한 산업생태계 복원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① (현황) 부실한 사업기획과 무리한 과업 추가 관행은 SW 등 기술집약 서비스 기업의 성장 걸림돌로 작용

- 부실한 사업기획,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최종 제품의 품질 저하
- 또한,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잦은 과업 변경, 부당한 과업 요구 및 불충분한 대가지급은 산업 경쟁력 저해 및 우수인력 이탈 초래*
 - * SW개발자로 오래 근무하기 어려운 이유(산업연구원, 2013년): 야근 등 과도한 업무(34.3%), 낮은 임금(31.4%), 교육훈련 부족으로 최신기술부족(15.7) 등

② (개선) SW 사업의 기획(설계)과 구현 단계를 분할 발주하여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조달청의 정보화 사업 발주지원 서비스 강화

- 기획과 구현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분할발주의 법적 근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계약예규 등) 마련

< 연도별 SW사업 발주 현황 >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0월*
건수(건)	4,064	3,766	3,272	2,863
금액(억원)	21,383	21,215	21,341	13,461

* 분할발주 6건(54.5억원) 포함

- 정보화 전담 인력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등 발주지원서비스 제공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수정, 산출내역서 작성 등 제안요청서 작성 전반을 지원
- SW 사업 발주시 사업비 산출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을 조정토록 하여 무리한 과업추가 관행 방지
- ☞ (기대효과) SW 사업 분할발주를 통해 단계별 전문성 제고 및 적정대가 지급으로 SW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품질 향상 유도

① (현황) 원가계산은 계약 목적물의 단가를 산정하는 작업으로 예정 가격 산출, 계약금액 조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업무

- 전문성을 요하는 원가계산 업무에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용역기관 제도 운용(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 계약금액 관련 분쟁의 증가, 원가구성이 복잡한 계약유형의 출현 등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긴요
 - 그러나, 대부분의 용역기관이 영세(전체 기관 중 75%가 20인 이하)하여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

보유인력	1~10	11~20	21~30	31~40	40~
업체 수	18	50	14	5	5

② (개선) 원가계산인력의 인프라 강화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정의규정·업무내용 등 법적 근거 정비*
 - * ① 정의규정·업무내용 등 규정 신설, ② 현행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에 명시된 요건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 중장기적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육성 및 민간의 활용방안 검토

* (개선방안 예시) ① 원가계산용역기관 보유 인력요건 강화, ② 원가 분석사에 대한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요건 강화, ③ 민간업체의 계약 수주시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 (기대효과) 원가계산 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예정가격 및 계약 금액 조정액의 적정한 산정 가능

① (현황) 공공발주 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분쟁 증가로 사회적 비용 증대 및 예산낭비 발생

-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의 규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빈번히 발생(업체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기연장 발생비율은 31%)

- 관련 소송도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 증대를 초래

* 최근 10년간 소송사건 30건 중 63.3%(19건)가 최근 3년('12~'14)에 발생하였고 피고(정부기관 등) 패소 비율은 76.7%(23건)

② (개선) 간접비 등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규정의 보완 등을 통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및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구체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 공기연장 간접비 등과 관련 연구용역 수행 중 ('15.7~12, KDI)

** 발주기관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거부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활성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 분쟁조정의 대상에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을 추가하여 운영(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4.11월)

- 공공기관의 계약분쟁 사항^{*}도 조정 대상으로 확대 추진

*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과정에서의 분쟁사항만 해당

- 분쟁조정 대상 확대 추세에 따라 사무국 설치 및 인력보강 추진

☞ (기대효과) 합리적 조정기준 제시 및 분쟁조정 활성화로 소송 비용절감 등 국민 편의 증진

IV. 과제별 추진 계획

추 진 과 제	담당부처 ·협업기관	일 정
1. 입찰 · 계약비리 근절 및 계약투명성 강화		
· 경쟁입찰 특례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 구매규격 사전공개 등 정보공개 내실화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입찰투명성 제고	기재부, 조달청	'16.상
	기재부, 조달청	'16.상
	기재부	'16.상
2.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 담합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제도 도입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공공입찰 참가 제한 · 부당납품 조달행위 감시 · 조사 강화	기재부	'16.상
	기재부	'16.상
	기재부, 조달청	'16.상
3. 계약 및 조달시스템 선진화		
· 종합심사낙찰제 정착 및 단계적 확대 · SW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주체계 수립 · 원가계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인프라 확충 · 간접비 등 계약금액조정제도 합리적 개선	기재부	'16 ~ '17
	기재부, 조달청	'15 ~ '16
	기재부	'16.상
	기재부	'16.상